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성북구 제3선거구 출신 강동길 의원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

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절차를
조례에 명시해 법제화하는 것입니다.

기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은 주민이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
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었지만

지난 해 6월 30일, 구역계만 설정해도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이 개정됐습니다.

이에 따라 주민이 보다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에 운영 중인 신속통합기획의 내용을 기본으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절차와 방향을 제시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- 감사합니다.